

(앞쪽)

제 호

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

1. 상호(명칭) :
2. 성명(대표자) :
3. 소재지 :
4. 시설·장비·기술인력 현황

시설	
장비	
기술인력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직인

(뒤쪽)

<변경사항>

일자	내용	확인

<행정처분사항>

일자	내용	확인